

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!



■ 지원서비스

구분	I 유형	II 유형
취업지원서비스 <small>*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</smal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 ☑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☑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 	
구직촉진수당	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 × 6개월 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<small>* 미성년자(만18세 이하, 2005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) 고령자(만70세 이상, 1954년생 생일 지난자부터)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</small>	
취업활동비용		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(직업훈련 참여시)
조기취업성공수당	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<small>*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</small>	
취업성공수당	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	

■ 참여요건

구분	I 유형		II 유형		
연령	15~69세	청년 18~34세	특정계층 15~69세	청년 18~34세	증장년 35~69세
소득	중위소득 60% 이하	중위소득 120% 이하	무관		중위소득 100% 이하
재산	4억원 이하	5억원 이하	무관		

* <24.2.9 시행> 청년 연령에 대하여 요건 완화(18세~34세 →15세~34세) 및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

* I유형 참여제외 경우

- ☑ 생계급여수급자
- ☑ 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(청년수당 등)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☑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다만, '22년 직접일자리(노동시장이행형)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*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
- ☑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

신청·접수



<https://www.kua.go.kr>



문의 ☎ 02-3468-4838, 4696



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+



국민취업지원제도로



특정계층

-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⑩ 노무제공자 ⑪ 건설일용직근로자 ⑫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(부)·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⑯ 영세자영업자 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 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⑲ 산재장해자 ⑳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㉑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 중·장년 참여자 ㉒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
- ※ 위기청소년 등 :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 아동 등

(소득·재산)

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 신청인 본인, ② 신청인의 배우자,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-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-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* 단위 : 원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중위소득 60%	1,337,067	2,209,565	2,828,794	3,437,948	4,017,441	4,571,021
중위소득 100%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
중위소득 120%	2,674,134	4,419,131	5,657,588	6,875,896	8,034,882	9,142,043

취업경험 확인

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(요건심사형), 기준 미만(비경험 선발형)

-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-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-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640천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신청방법

- 신청주체**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- 신청방법** 온라인(www.kua.go.kr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- 신청장소** 서울강남고용복지+센터
- 신청기간** 연중 상시
- 제출서류** •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*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


신청·접수

온라인 www.kua.go.kr 오프라인 서울강남고용복지+센터

문의·상담

서울강남고용복지+센터 ☎ 02-3468-4838, 4696

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확인해주세요!
※ ("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" 이용방법) 카카오톡 채팅방 → "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" 검색 → 채널 추가 후 이용